

서울특별시 공업용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승 의원입니다.

- 본 의원 외 23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업용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본 조례안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은 법률에서 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근거 없이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계량기 시험 결과 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시험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이 부담하도록 하며, 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사무의 일부를 조례에 직접 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위임할 사무를 조례에 직접 규정하는 것입니다.

-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의무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계량기 이상 여부 확인을 위한 시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시험결과 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험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 부담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조례에 직접 규정하여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